

수신: 국회의장

제목: 『國政監査 및 調査에 關한 法律』 개정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원서 3부

청원자(대표)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전송: 793-4745

성명: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공동대표 김 중 배 인

소개의원: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성명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건명	「國政監査 및 調査에 關한 法律」 개정청원
소개년월일	1997년 5월 29일

소개의견

1. 우리 국회에서는 주요안 국가적 사안을 다루기 위한 국정조사가 매시기마다 정쟁의 대상이 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공청회·청문회의 개최는 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하여 결국 과반수의 위원이 동의하지 않는한 개최가 불가능하여,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러한 청문회의 소집요건에 의해 무산되는 예가 있었습니다.

2. 참여연대의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청문회소집요건의 완화를 통해 공청회·청문회를 상설화함으로써 국가적인 현안이 당리당략에 의해 좌절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정조사의 소집요건을 완화하여 일상적인 국정조사 활동이 가능토록 하였고, 자율적인 조사활동이 가능하도록 국정조사특위 자체의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원의 감사활동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정 감사와 조사활동의 실질화를 꾀하였습니다.

3. 청원인의 의견은 국회의 주요한 역할의 하나인 국정에 대한 감시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회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의회정치발전을 가져오는 것이라 판단되어 이를 소개하는 바입니다.

소개의원: 인

청원서

청원제목 : 「國政監査 및 調査에 關한 法律」 개정청원

첨 부 : 청원안 1부
조문대비표

1997년 5월 29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대표전화: 796-8364, 팩스: 793-4745, 하이텔/천리안/나우콤: PSPD

『國政監査 및 調査에 關한 法律』 개정청원

1. 개정 취지

주요한 국가적 사안이 발생하면 의당 국회의 국정조사활동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에서는 국정조사특위의 소집요구 자체가 매시기마다 정쟁의 대상이 되어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공청회·청문회의 개최는 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하여 결국 과반수의 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개최가 불가능하였다. 대체로 어느 위원회든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는 집권당에 의해 그러한 공청회·청문회의 개최가 봉쇄당하였던 것이 현실이었다. 예민한 사안일수록 국민의 여론을 수렴할 필요성이 더 높고 전문의견의 청취가 불가피한데도 오히려 다수당의 회피로 인해 그러한 청문회·공청회의 개최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청문회소집요건의 완화를 통해 공청회와 청문회의 상설화를 기도하였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국정조사의 소집요건을 완화하여 일상적인 국정조사활동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자율적인 조사활동이 가능하도록 국정조사특위 자체의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원의 감사활동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정감사와 조사활동의 실질화를 꾀하였다.

2. 주요 골자

가. 국정조사 소집 요건을 완화하여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이 가능케 하는 등 소수당의 요구만으로도 국정조사가 가능토록 함(관련조항 제3조 ①항 개정, ④항 개정, ⑤,⑥항 삭제).

나. 조사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없이 자율적으로 그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함.(관련조항 제9조 ①,③항 개정, ②항 삭제)

다. 국정감사, 조사의 효율화를 위해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원이 감사하여 국회에 보고토록 함. (16조 ⑤항 신설)

3. 개정안 전문

제3조 (조사) ① 국회는 제적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관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 기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조사를 시행한다.

⑤, ⑥ 삭제

제9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의결로서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조사계획서의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활동기간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채택될 때까지로 한다.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제적의원 1/4이상의 요구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 또는 기타에 요구하고,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제16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⑤ 국회는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청을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條文對比表

現 行 法	改 正 案
<p>제3조 [조사]</p> <p>① 국회는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p> <p>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한다.</p> <p>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p> <p>⑥ 조사위원회는 본회의로부터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는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p>	<p>제3조 [조사]</p> <p>① 국회는 제적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p> <p>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관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 기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조사를 시행한다.</p> <p>⑤ 삭제</p> <p>⑥ 삭제</p>

現 行 法	改 正 案
<p>제9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p> <p>① 본회의는 의결로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고 조사를 장기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활동기간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p> <p>③ 조사계획서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활동기간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p>	<p>제9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p> <p>① 위원회는 의결로서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p> <p>② 삭제</p> <p>③ 조사계획서의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활동기간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채택될 때까지로 한다.</p>
<p>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p> <p>① 위원회는(제 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 기타에 요구하고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다.</p>	<p>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p> <p>①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제적의원 1/4이상의 요구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 또는 기타에 요구하고,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다.</p>
<p>제 16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p> <p>①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p> <p>②</p> <p>③</p> <p>④ 국회는 제3항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제16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p> <p>⑤ 국회는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청을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